

의안번호	2125788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3. 12. 12.
추계번호	23C49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제1항 (자립지원)	○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자립에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제1호의3 신설) - 자립에 필요한 약물 오용·남용 등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제1호의4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8조제1항(자립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남용 등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실시할 경우 현행 지원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

- 개정안은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약물 오남용 등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수,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참고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2023년 예산 147억 600만원)을 통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전담인력을 자립준비청년에 배정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2023년 예산 11억 4,500만원)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윤경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윤경	02-6788-4742	yoonklee@assembly.go.kr